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803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임은정(기소), 고신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성민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고정417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2. 2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교육원 교수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교육원(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제공하는 'E' 강의를 위한 강의교안을 제작하면서 F, G 저자, H 출판의 'E'을 주교재로, I 저자, H 출판의 'J'을 부교재로 각 선정한 후, 위 두 교재(이하 '이 사건 교재'라고 한다)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을 축약·발췌·복제하여 B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유료 인터넷 동영상강의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주교재로 배포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재에서 피고인이 축약·발췌·복제하였다는 상당 부분은 기존의 다른 저작물들의 해당 부분과 그 표현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학술이론 등에서 제시된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형식을 이용하여 설명한 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재 저자의 창작성 있는 표현 및 이에 대한 축약·발췌·복제 부분이 어떠한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인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복제권 등으로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재의 표, 그림, 문단구성 형식 및 목차의 구성과 이름 등 'E'이라는 학문을 저작자가 그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술한



창작적인 표현방식들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여 교육자료로 만들어 배포하였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자의 창작적인 표현방식, 즉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물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 전문 분야에서의 보편적 학술이론 등을 서술하고자 하는 교과서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복제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부분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의 표현과 동일·유사한 경우는 물론, 기존 이론이나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의하여 설명하거나 정리한 경우 또는 논리구성상 달리 표현하기 어렵거나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복제권 등의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 그리고 원 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작권법 소정의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상대방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원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15625 판결,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판결 등 참조).

○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령 그것이 독창적이고 새로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특히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1993. 6. 8. 선고 93다3073 판결 등 참조).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8호는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 저작물'을 저작물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기능적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작



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또한,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법은 그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설령 기능적 저작물이 종전의 저작물 등과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848 판결,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복제 여부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이 제작한 강의교안(이하 '이 사건 강의교안'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교재 모두 'O', 'P', 'Q' 등 동일한 내용의 표제를 사용하여 목차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E'이라는 보편적 학술이론을 다루는 실용적 저작물로서 성격의 정의, 성격을 평가하는 방법론, 학계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성격이론 등의 학습을 위해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목차 및 내용구성인 것으로 보이고, 그 표현에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 이 사건 강의교안과 이 사건 교재의 유사 부분 중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학계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성격이론의 주요개념을 서술하는 내용으로서, 대체로 기존의 다른 저작물의 표현과 동일·유사하거나 기존 이론이나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의하여 설명하거나 정리한 경우, 또는 논리구성상 달리 표현하기 어렵거나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이 사건 강의교안과 이 사건 교재의 유사 부분 중 학술적 내용을 그림 등으로 나타낸 표현 부분은, 선행문헌에서 동일·유사한 학술적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그림으로 표현된 바 있거나, E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독자의 이해편의성이라는 제약 등에 비추어 누구라도 쉽게 그 그림으로 도해화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경우 누가 하더라도 비슷한 그림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거나, 그 학술적 내용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림 등으로 나타낸 표현에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고발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저작권 침해일람표의 순번 6, 15(증거기록 제4권 41, 43쪽) '프로이트의 자각 수준'을 나타낸 그림의 경우, 이 사건 강의교안과 이 사건 교재의 내용이 유사하기는 하나, 이는 프로이트의 정신역동이론(정신분석학)을 대표하는 빙산모델(또는 빙산이론, Iceberg Theory)을 설명하기 위하여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림인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0

재판장 판사 김정도 _____

 판사 손대식 _____

 판사 남근욱 _____